

2021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모집공고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2021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협동조합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2월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유의사항

- ① 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조합원 전원이 소상공인마당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공포'13.8.6, 시행'14.8.7)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조합원 전원의 회원가입이 필요 합니다.
- ② 사업신청서 및 제출증빙서류 등 협동조합이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이 해지(지원금 환수) 될 수 있습니다.
- ③ 선정조합은 지원협약 체결 전까지 관련기관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상품에 반드시 가입 후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권 미제출 시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며, 증권가입 시 SGI서울보증에서 예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예치금은 해당회사의 자체 방침으로 공단 방침과는 무관 합니다.)
- ④ 협동조합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금은 사업추진기간, 실제수행내용 등에 따라 승인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⑤ 정부지원금은 협동조합과 조합 내 조합원과의 내부거래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내부거래 : 협동조합에서 소속 조합원으로부터 재화나 서비스 구입 등
- ⑥ 同 사업 선정 시, 선정조합은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협약 및 사후관리 기간 동안 협동조합 현황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미준수시 선정취소 또는 협약해지(지원금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⑦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상 기재착오나 연락두절, 사업신청 관련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손해는 제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홈페이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www.semas.or.kr>
[소상공인마당] <http://www.sbiz.or.kr>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 <http://coop.sbiz.or.kr>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역량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성 및 조합원(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 **사업기간** : '21년 1월 ~ 10월
- **지원규모** : 75.98억원(공동일반 25.98억원, 공동장비 50억원)
- **신청방법** : 사업 홈페이지(coop.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연간 1회 모집

구 분	일 정
신청 . 접수	2.25(목) 18:00 ~ 3.31(수) 18:00

- **지원대상** : 협동조합기본법¹⁾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²⁾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중 아래요건을 충족한곳

구 분	구성요건
일반형	① 소상공인 5개사 이상 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인 소상공인
선도형	- 전년대비 매출 증가율이 20% 이상 이면서(필수), ①또는②중 1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조합 * '19 대비 '20년 실적('19년 또는 '20년 매출이 없는 경우 신청불가) ① 조합원 20인 이상, 조합원의 50%이상인 소상공인 ② 소상공인협동조합 연합회* * 소상공인협동조합(조합원의 50%가 소상공인) 3개 이상으로 구성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동조합 20개사 이상(조합원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
고성장형	- ①,②,③,④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조합(필수) ① '13년~'20년 공동사업 既지원 조합 ② 일반형 및 선도형 조합원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조합 ③ 전년도 매출 10억원 이상 일반형 및 선도형 조합 ④ 최근 3년 이내* 매출, 고용 중 하나 이상의 증가율이 20%이상인 조합 * '19 대비 '20년 또는 '18년 대비 '20년 실적

1)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권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의 정부지원 신청목적의 협업(수익)사업 내용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업무) 제①항 12호에 해당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후 신청 가능

- 주무관청 : 전국조합→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조합→지방자치단체

* "[참고4]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확인기준" 참조

- **참여제한** : 조합 또는 조합원 중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
 - 조합(연합회)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휴·폐업중인 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소상공인협동조합 실태점검 및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참고3)을 영위하고 있는 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을 위해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참여 가능(협약서 제출 필수)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확인방법>

- 대기업 확인 : <http://www.kreport.co.kr/>
- 프랜차이즈 확인 : <https://franchise.ftc.go.kr/>
- 중소기업현황정보 확인 : <http://sminfo.smba.go.kr> (로그인 필요)

- 당해연도 사회적경제 성장집중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우대사항** : 사회적 배려계층 및 정책적 고려대상은 현장평가 가점우대

구 분	우대사항 해당내용	비 고
청년	이사가장이 청년*인 경우 또는 청년*이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인 조합 * 접수일('21.2.25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81.2.26일 이후 출생자)	
여성	이사가장이 여성인 경우 또는 조합원(소상공인) 중 여성기업이 있는 조합	
장애인	이사가장이 장애인*인 경우 또는 조합원(소상공인) 중 장애인기업(확인서)이 있는 조합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백년가게	'백년가게' 지정 조합원이 참여한 조합	
제로페이 가입	'제로페이' 가맹 조합 또는 조합원이 참여한 조합	
협업 아카데미	협업아카데미(인큐베이팅, 교육, 컨설팅) 중 1개 이상 참여한 조합	
풍수해 가입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조합 또는 조합원이 가입한 조합	
스마트 설비	스마트 설비를 도입한 조합 또는 조합원이 포함된 조합(유형A, B중) * (유형A)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가 확인된 도입기업 * (유형B) 정부의 구축수준 확인제도를 통한 스마트공장 구축확인 기업	[참고5] 확인방법 참조
지역특구 소재	지역특구 내 소재한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	[참고6] 참조

□ **지원내용** :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을 지원

○ **지원분야** : 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규모화 사업, 프랜차이즈시스템, 공동장비

지원분야		세부내용	비고
공동일반	개발	- 신제품·기술, 공정개선, ERP 구축 등 각종 기법	
	브랜드	- 브랜드(CI, BI, 네이밍, 캐릭터), 디자인(상품, 포장)	전문기관수행
	마케팅 ¹⁾	- 홍보물(리플렛, 카탈로그 등), 광고(온·오프라인), 전시회, 박람회 등	
	네트워크	-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규모화 사업	- 조합원수 및 조합원 분포지역 확대를 위한 예비 조합원 대상 교육사업(설명회) 등 조합 자체사업	일반형 신청불가
	프랜차이즈 ²⁾ 시스템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 매뉴얼, 프로세스 및 공정개선을 위한 개발비	
공동장비		- 품목당 1천만원 이상의 장비 지원 *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	차량 지원 제외

- 1) 마케팅 분야의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21년 판로지원사업(판매전)과 중복지원 불가
 - 2) 프랜차이즈 시스템 분야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체계) 구축을 필수로 하고, 구축 후 (협약서상 사업기간 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등록을 필수로 함
- * "[참고2] 지원분야(가이드라인)" 참조

□ **지원한도** : 조합 유형별 한도 및 지원분야 차등

구분	분야별 지원내용(지원한도, 정부보조비율)
일반형	1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선도형	2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고성장형	5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 1) 일반형, 선도형, 고성장형 모든 지원 분야(일반/장비)를 포함하여 지원한도 차등
- 2) 지원금이외의 비용(자부담, 부가가치세 등)은 조합(연합회) 부담
- 3) 연간 1회 지원

* 단, 1회차 안에서 상기 지원한도내에서 공동일반과 공동장비 함께 신청가능

4) 공동사업 졸업제 : 일반형 3회 + 선도형 3회 지원 후, 공동사업 지원 종료('20년부터 지원 횟수 기산)

* 단, 고성장 조합(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고용 증가율이 20%이상 증가)의 경우 졸업유예 및 계속지원

(예시) '21, '22, '23년 공동사업 일반형으로 선정·지원받은 업체가 '24년 공동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 20인으로 확대하여 선도형 요건에 부합하거나,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20% 증가 등 고성장 조합으로 성장한 경우 공동사업 선도형 또는 고성장형으로 지원가능

2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coop.sbiz.or.kr)

① 조합원 전원이 '소상공인마당(sbiz.or.kr)' 홈페이지 회원가입*

* "[참고8] 소상공인마당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방법" 참조

② '협업활성화(coop.sbiz.or.kr)' 홈페이지에 조합이사장이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등록

- 사업신청 시, 조합유형을 선택하고, 사업신청(조합 정보, 사업비 신청내역 등) 및 증빙서류 스캔 등록

* 증빙서류 원본은 협약체결 시 "[참고7] 관할센터"에 제출(선정되지 않은 조합은 미제출)

2021년도부터 “NICE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신청 서류의 일부서류 제출 가능

* “NICE원클릭서비스”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소상공인 확인 서류, 세금납부 확인(국세, 지방세), 매출증빙서류를 고객의 pc에서 공단 사업 시스템으로 비대면 일괄 발급 및 전송 서비스

1. NICE평가정보 원클릭서비스 이용(연계)방법

- 협업활성화 홈페이지-외부자료실에 매뉴얼 참고

2. 제출서류 첨부 시 NICE 원클릭서비스 연계 관련 유의사항

(NICE원클릭서비스 연계 조합)

1. [기본정보]탭에서 협업체명, 조합구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2. **NICE** 버튼 클릭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소상공인 확인서류, 세금납부 확인(국세, 지방세), 매출증빙서류가 연결되어 자동첨부 완료*

* 단, NICE원클릭서비스에서 조합이 발급·제출한 서류에 한해서만 자동첨부

4. NICE 원클릭서비스 자동첨부 서류 외에 별도 첨부해야하는 나머지 서류(사업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출자자 명부 등)는 조합에서 직접 첨부
5. [사업비]탭에서 사업비 집행계획 입력
6. [조합원]탭에서 조합원 정보 입력
7. 다시 [기본정보]탭으로 이동 후 **NICE** 버튼 클릭

(NICE원클릭서비스 미연계 조합)

1. [기본정보]탭에서 협업체명, 조합구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2. **NICE** 버튼 클릭하여 해당링크 이동 후 가입 후 이용 또는 공고상의 제출서류 (공고문 5, 6Page)를 확인하여 조합에서 직접 모든 서류 첨부
3. [사업비]탭에서 사업비 집행계획 입력
4. [조합원]탭에서 조합원 정보 입력
5. 다시 [기본정보]탭으로 이동 후 **NICE** 버튼 클릭

※ 단, 협업활성화 홈페이지에 기 등록되어 있는 조합 중 조합원이 변경된 경우, [조합원]탭에서 조합원 변경정보 입력 후, 다시 [기본정보]-**NICE** 버튼을 클릭 필수 (**NICE** 버튼을 재클릭해야만 변경된 조합원 정보로 입력 가능)

□ 제출서류

제출서류	검토사항	제출범위	
		협동조합	연합회
작성서류	(1) <서식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신청화면상 "자가진단" 입력)	협동조합	연합회
	(2) <서식2> 사업계획서	협동조합	연합회
	(3) <서식2-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조합원 전원	연합회 회원 조합, 조합원 전원 * 단, 협동조합 20개 이상 연 합회는 회원 조합 서류
	(4) <서식2-2> 사업 참여 협약서	등기임원	연합회 등기임원
	(5) <서식3> 공동사업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협동조합	연합회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NICE 연계	-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하여 '제출용'으로 발급 - 등기임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칭 및 법인 등록번호로 등기되어 있어야함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협동조합	연합회
사업자 등록증명 NICE 연계	- 소상공인이 아닌 조합원(자연인)의 경우 제출 제외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협동조합, 조합원 전원	연합회, 회원조합
소상공인 확인서류 NICE 연계	- (권장)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가능)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매출액 확인서류 <참고4>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확인 기준	조합원 전원	연합회 회원 조합, 조합원 전원 * 단, 협동조합 20개 이상 연 합회는 회원 조합 서류
고용인원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조합(연합회)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18년 대비 '20년 고용인원 20%이상 증가 조합 : '18, '20년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19년 대비 '20년 고용인원 20%이상 증가 조합 : '19, '20년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고성장형 중, 고용증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협동조합	(고성장형 중, 고용증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연합회
세금납부 확인 NICE 연계	-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분 - 신규 설립으로 제출 불가 시 등기임원 전원 제출	협동조합, 조합이사장	연합회, 회장

제출서류	검토사항	제출범위	
		협동조합	연합회
매출증빙 서류 NICE 연계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 업력 3년 미만 업체는 제출 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협동조합	연합회
조합원 명부	- 발기인, 성명, 업체명, 사업자번호 필수 -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번호로 등기되어 있어야함 - 신청일 기준 조합원 전원 확인 가능 명부	협동조합	연합회, 회원조합 * 단, 협동조합 20개 이상 연합회는 회원조합 서류
출자자 명부	- 성명, 생년월일, 출자좌수, 출자금액 필수 -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번호로 등기되어 있어야함 - 신청일 기준 조합원 전원 확인 가능 명부	협동조합	연합회, 회원조합 * 단, 협동조합 20개 이상 연합회는 회원조합 서류
협동조합 정관	- 각 정관 1조 조합 설립 기준 법령 확인 필수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이익배당내용 포함 필수	협동조합	연합회, 회원조합
이사회 의사록	- 최근 1년간 이사회 의사록 - 해당사업 참여에 대한 이사회 결의사항 필수 포함	협동조합	연합회, 회원조합
기타서류	- 기타 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협동조합	연합회

* 신청기한 내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대상 조건이 아닌 경우 지원 제외

** "[참고9] 제출서류 발급처" 참조

□ 평가·선정방법 : 3단계의 점검 및 평가·심의를 통하여 선정

① (서류검토) 사업계획, 증빙 등 제반서류 누락 및 흠결여부 등 검토

- 조합(연합회)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보완요청 및 반려처리

< 서류검토 후 처리방법 >

구분	처리조건	후속조치
접수	-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는 경우	- 현장평가 등 향후 추진 일정 안내
보완	-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 누락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	- 보완사항 안내 * 보완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보완 , 미 보완시 탈락. 단, 부득이한 경우 보완기한(3일 이내)을 연장할 수 있음
반려	- 자격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반려(탈락)사항 안내

② (현장평가) 외부전문가가 신청조합(연합회)을 방문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적합' 판정을 받은 조합(연합회)은 2차(발표)평가 진행

* 코로나 확산에 따라 현장방문이 어려운 경우 외부전문가를 통한 서면, 유선, 화상 평가로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은 공단 안내에 따라 조합 준비서류(조합 교육이력 증빙, 가점 증빙서류)를 사전에 공단 메일로 송부

** 유선평가 결과 평가자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합에 대해서 현장 확인 실시(서류 접수 후~선정 통보 전까지)

③ (선정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 7인 내외로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평가 통과 조합(연합회)을 대상으로 선정심의 실시

- (심의내용) 협동조합(연합회)의 비즈니스모델, 역량, 발전 및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지원금액 타당성 여부를 심의

- (심의방법) 대면평가로 이루어지며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서류를 토대로 발표 및 심의위원의 질의응답으로 심의

4

향후 추진일정(안)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접수											
현장평가											
선정위원회											
결과통보											
협약체결											
사업진행											
사업완료											
사업정산											

* 사업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참고1]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추진절차" 참조

5

의무사항

- 사업에 선정된 조합(연합회)은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국가보조금관리시스템) 사업비 집행 시 「국가보조금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필수 이용해야하며, 미 사용시 사업추진 불가
 - (교육이수) 선정 통보된 조합의 조합원 및 조합사업 담당자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운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정보제공) 공단의 요청자료* 제공 및 전산시스템에 정보입력**을 해야 하며, 미 이행 시 협약사항에 의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중기부 및 공단에서 서면·유선·이메일 등을 통해 요청하는 조합현황 정보 제공
 - ** 조합에서 직접 재무정보 등 현황정보 입력(연 1회 이상 입력하고, 필요 시 증빙 자료도 업로드)
 - (이행보증증권 제출) 승인된 총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공급가액)에 대해 발급
 - * 보증기간은 사업 협약기간과 동일

- (자부담금 및 VAT부담) 유형별 총 사업비*의 20%(장비 30%) 이상 “자부담금”과 사업진행 시 소요되는 “총 VAT(10%)”는 협동조합 부담
 - *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정부보조금+자부담금)
 - ** 지원조합은 협약체결 후, 지원조합 명의의 사업전용통장을 개설하고, 자부담금을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금, 입금하지 않을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판로 및 아카데미 사업참여) 협동조합 설립 초기 정착 및 안정화를 위해 당해연도 공동사업 신규 선정 조합의 경우, 당해연도 협업아카데미 사업에 1회 이상 참여*, B2C(소비자거래)가 가능한 조합은 차년도('22년) 공동판로 사업 필수 참여
 - * 이사장 포함 조합원 3인 이상이 아카데미 “교육”수료

6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단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함
-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 최종사업신청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으로 함
- 증빙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미이행 시 정부지원금은 미지급함
 -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교육이수, 자부담금 입금 등 협약체결 요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사업신청서 등 신청기관이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일체의 허위사실이 없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지원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 * 신청대상 자격요건(예 : 조합원 수 허위 보고 등) 등을 허위로 하여 참여한 경우 정부지원금 미지급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선정결과 통보 전까지는 사업 재신청이 불가하며, 통보 이후 탈락조합(연합회)에 한하여 재신청이 가능함

구 분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사업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업지원실	042-363-7151, 7714
정책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042-481-1633

- (참고) 1.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추진절차
 2. 지원분야(가이드라인)
 3.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4.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확인기준
 5. 스마트 설비 지원기업 확인 기준
 6. 지역특구 지정현황
 7. 전국 지역센터 및 관할구역 현황
 8. "소상공인마당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방법
 9. 제출서류 발급처

- (서식) 1. 기본요건 충족여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시스템 입력사항으로 서식 미첨부)
 2.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2-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2-2.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참여확약서
 3. 공동사업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참고1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추진절차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추진절차도 >

단계	절 차	추진내용	추진주체
①	지원사업 공고	○ 공단 홈페이지 공고	공단
②	지원신청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신청 - 공고문의 신청서 서식 활용	협동조합(연합회)→ 공단
③	서류검토	○ 제출서류 검토 - 제출서류 구비확인	공단
④	현장평가	○ 신청조합(연합회) 현장평가 - 현장평가표로 조합(연합회) 방문하여 평가 단, 현장방문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전염병, 자연 재해 등) 발생시 서면, 유선, 화상평가 추진가능	지방청, 공단
⑤	선정심의위원회	○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외부전문가)하여 선정심의 - 제출서류 및 현장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선정심의	지방청(일반형) 공단(선도·체인)
⑥	선정통보	○ 최종선정 결과를 선정조합·연합회에 통보	공단 →협동조합(연합회)
⑦	사업운영교육	○ 선정조합·연합회 대상 사업지침 및 운영교육실시 - 지침, 사후관리, e나라도움시스템 등 교육	공단 →협동조합(연합회)
⑧	협약체결 및 사업비교부	○ 사업지원 협약 체결 - 교육이수, 이행보증보험발행 등 ○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사업비 교부	공단 ↔협동조합(연합회)
⑨	사업수행	○ 사업추진	협동조합(연합회)
⑩	완료보고서 제출	○ 선정(승인) 된 사업비 집행완료 후, 완료보고서 제출	협동조합(연합회)→ 공단
⑪	완료점검	○ 완료보고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접수 후, '완료점검' 실시(현장점검)	공단
⑫	사후관리	○ 지원 완료된 협동조합의 보조금 사용점검 및 진행 현황 등 전반적인 관리를 위한 점검	공단

참고2

지원분야(가이드라인)

분 야	지원가능	지원제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제품·기술, 공정개선, ERP 구축 등 각종 기법 - 외부위탁으로만 진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레시피 개발 - 외부 위탁사에 조합·조합원 참여 불가
브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CI, BI, 네이밍, 캐릭터) - 디자인(상품, 포장) - 전문기관 지정·수행 * 협동조합과 수행기관 간 1:1 매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상품, 포장)의 경우 시제품 1개 외 제작 비용 지원 불가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물(리플렛, 카탈로그 등), 광고(온·오프라인), 전시회, 박람회 등 - 외부위탁으로만 진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례품성격의 물품제작 (예) 티슈, 화장지, 생수, 아이스팩 등 - 조합의 물품의 소지 또는 이동 시 편리·효용성을 주는 것을 고유 목적으로 하는 물품 또는 재료비 성격의 물품 제작 (예) 박스, 포장지, 쇼핑백, 비닐봉투 등 단,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시 일정량의 쇼핑백 제작은 가능 - 조합 또는 조합원 사업체에서 사무용 소모품 또는 비품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물품 제작 (예) 다이어리, 볼펜·연필, 만년필, 우편봉투, 서류봉투, 청소용품, A4용지 등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 외부위탁으로만 진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위탁사에 조합·조합원 참여 불가 - 단순 하드웨어는 지원 불가
규모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의 규모화를 위한 조합 자체교육·인큐베이팅·연수 등 자체사업 - 조합의 자체진행 사업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비·인건비 지원 불가 - 계획서 제출 내용 외 사용 불가 - 외부 위탁 진행 불가
프랜차이즈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 매뉴얼, 프로세스 및 공정개선을 위한 개발비 - 외부위탁으로만 진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위탁사에 조합·조합원 참여 불가 - 사업기간 내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 미비 시 지원취소
공동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별 구매단가 1천만원 이상 장비 - 협약기간(5년)간 보관관리가 용이한 장비 -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 장비 * 공동장비의 경우 협동조합(연합회) 명의(자가, 임대차, 저전세, 전대차 등)이고, 정부지원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가건물, 불법건축물, 미등기 건물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비용 1천만원 미만의 장비 - 모든 차량 (오토바이 등 포함) - 시설, 공사비(설치비, 전기배선작업 등), 장비 운반비용(수수료, 탁송료 등) 기술 이전료 등 - 부수적인 비용은 지원 불가 * 구축에 공사가 필요하거나 소요비용 중 공사비에 대한 분리가 곤란한 장비는 지원불가 * 단, 공동장비 설치·운영에 필요한 시공 재료비(전선, 배수관 등)는 지원 가능 - 사무용품, 집기류 등 소모성 자재, 냉·난방기등 편의시설, 단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전산장비(노트북, 컴퓨터 등) 등 범용장비는 지원 불가 - 중고제품은 지원이 불가 - 조합·조합원 생산·취급 장비 불가

참고3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희주점업
56212	무도유희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착한 임대인'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신청 가능 ('20.12.~'21.6.)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표준산업분류	업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 ²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창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담배도매업(46333), 모피 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희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희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참고4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확인 기준

1 지원대상 확인 개요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① 중 소상공인^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③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①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②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③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2 소기업 확인방법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 분	매출액 확인 서류
간 이 과 세 자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 반 과 세 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매출액 확인서류 등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출액으로 확인)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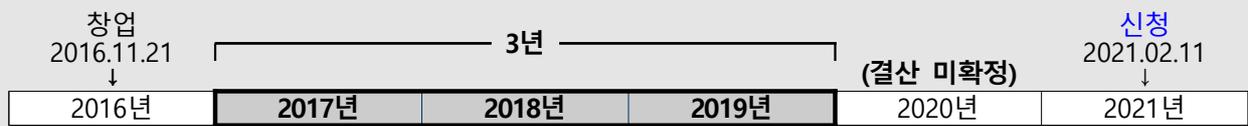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예시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 평균매출액등 : (2018년~2020년 매출액 합계)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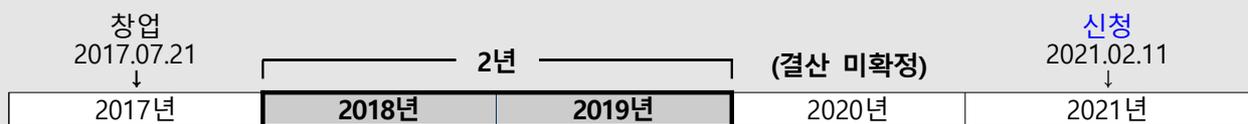


☞ 평균매출액등 : (2017년~2019년 매출액 합계) / 3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인 경우



☞ 평균매출액등 : (2019년~2020년 매출액 합계) / 2



☞ 평균매출액등 : (2018년~2019년 매출액 합계) / 2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



☞ 평균매출액등 : '20.02.16~'20.12.31 매출액(A) 연환산 (= (A/319일) × 365일)



☞ 평균매출액등 : ① + ②

① '20.08.16~'20.12.31 매출액(A) 반기환산 (= (A/138일) × 18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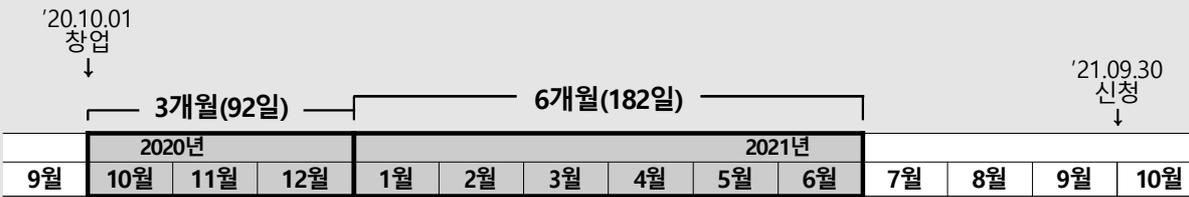
② '21.01.01~'21.06.30 매출액(B) 반기환산 (= B)

<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



☞ 평균매출액등

: '20.07.01~'20.12.31 매출액(A) 연환산 (= (A × 2) or { (A/184일) × 365일 })



☞ 평균매출액등 : ① + ②

- ① '20.10.01~'20.12.31 매출액(A) 반기환산 (= (A × 2) or { (A/92일) × 184일 })
- ② '21.01.01~'21.06.30 매출액(B) 반기환산 (= B)

<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



☞ 평균매출액등 : ((2021년 6월 2일 ~ 2021년 6월 10일 매출액 합계) / 9일) * 365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사례

2017년 창업한 A기업은 음료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고 있으며, **2018년~2020년** 3년간 평균매출액은 110억원(음료제조업 분야에서 70억원, 도매업 분야에서 40억원)임. **2021년 6월에 지원신청한 A기업**의 소기업 해당 여부는?

1 주된 업종 판단

70억원(음료제조업)과 40억원(도매업)을 비교하여, 매출액이 더 큰 업종이 주된 업종에 해당함

⇒ 음료제조업이 주된 업종

2 매출액 기준 확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라, A기업의 소기업 여부 판단에 적용할 업종은 '음료제조업'임을 확인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3 규모기준 충족여부 확인

3년 평균매출액 110억원과 업종별 기준인 120억원을 비교

⇒ 규모기준을 충족

4 소기업 적용기간 확인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므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2020.12.31.)에서 3개월이 경과한 '21년 4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에 해당

⇒ 적용기간 충족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 산업분류의 대분류(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에 따른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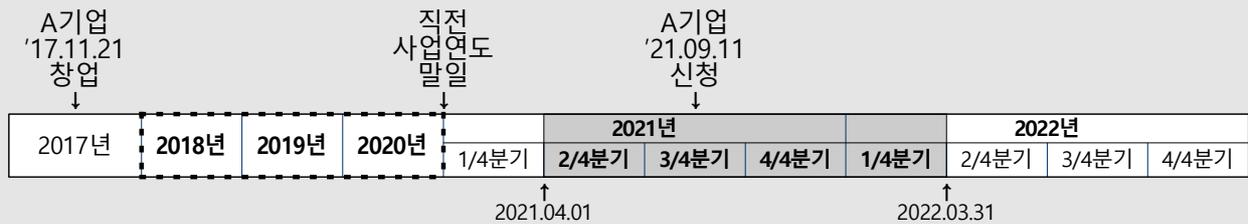
○ (소기업 해당여부 적용기간)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②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한 경우	
③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경우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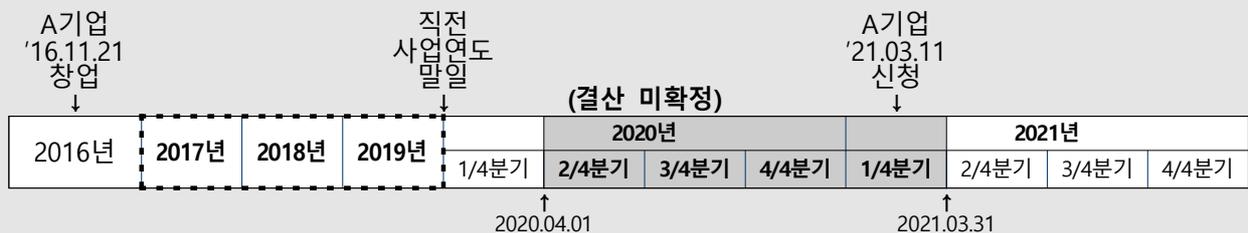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및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 소기업 여부 적용기간 예시

①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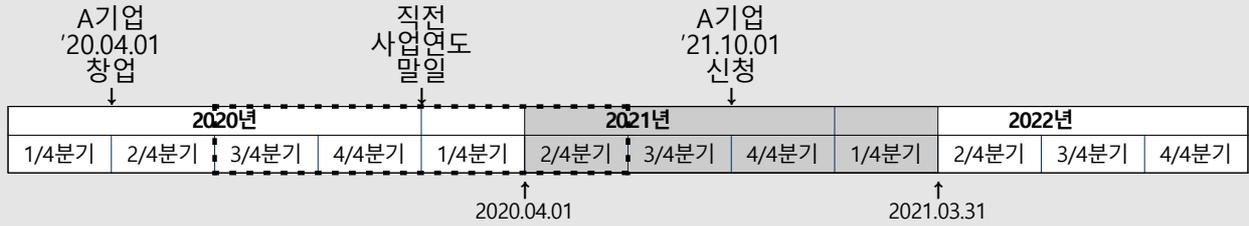


☞ A기업 2021년 09월 11일 신청 → A기업의 **3개년도(2018년~2020년)의 평균매출액등**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21년 04월 01일부터 2022년03월 31일까지(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소기업으로 인정**



☞ A기업 2021년 03월 11일 신청 → (2020년 결산 미확정) → **3개년도(2017년~2019년)의 평균 매출액등**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20년 04월 01일부터 2021년 03월 31일까지(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소기업으로 인정**

②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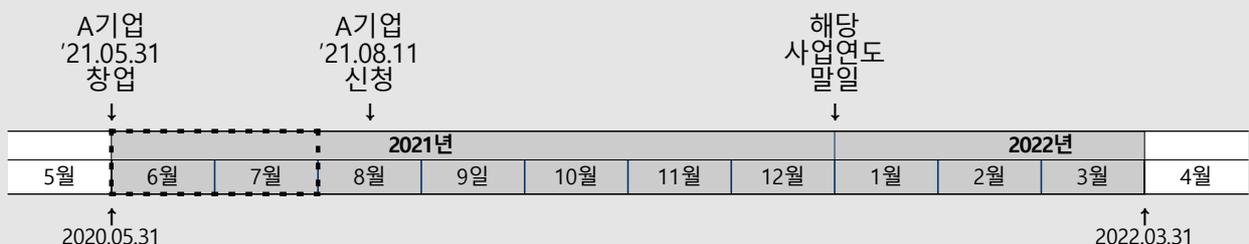


☞ A기업 2021년 10월 01일 신청 → 2020년 07월 01일부터 2021년 06월 30일까지 계산한 평균 매출액등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21년 04월01일부터 2022년 03월 31일까지(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소기업으로 인정



☞ A기업 2021년 03월 01일 신청 → A기업 창업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을환산한 평균매출액등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20년 09월 01일부터 2021년 03월 31일까지(신청일이 직전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창업일부터 창업한 사업연도의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③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경우



☞ A기업 2021년 08월 11일 신청 → A기업은 같은 해 2021년 05월 31일에 창업 → A기업의2021년 6월~7월 매출액을 환산한 평균매출액등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21년 05월 31일부터 2022년 03월 31일까지(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③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종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②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참고사항>

<p align="center">근로자</p>	<p>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p>
<p align="center">임원</p>	<p>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등기된 이사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이외의 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개인사업자는 사장) 또는 무급 가족종사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자 중 무한책임사원 및 업무집행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p>
<p align="center">일용 근로자</p>	<p>「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p>
<p align="center">3개월 이내의 근로자</p>	<p>고용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을 반복하여 계속 근무하는 자는 상시근로자임</p>
<p align="center">연구 전담 요원</p>	<p>기업 내 조직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증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로하더라도 연구전담요원 외의 일반사무직은 상시근로자에 포함</p>
<p align="center">단시간 근로자</p>	<p>-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60시간/월 이상 근로하는 자는 1명을 0.5명으로 하고, 60시간/월 미만인 자는 0명으로 함 ※ 고령화 시대 및 다양한 일자리 형태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일자리 나누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012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이 제외되었음</p>

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예시>

구분	창업일	지원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19. 11. 20	'21. 3. 25	(직전 사업연도) '20년 1월~'20년 12월
예시2	'20. 2. 5		(최근 12개월) '20년 3월~'21년 2월

④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및 확인 방법

구 분		내 용
확인 서류	상시 근로자 無 (택 1)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 근로자 有 (택 1)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
확인방법		<p>■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받아 상시 근로자수를 파악</p> <p>(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21.3.26 지원 신청할 경우, 2020년 1월~12월까지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12장)</p> <p>■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 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 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실내역 포함 된 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함께 제출받아 확인</p> <p>(예시) 창업일: '19년 11월 2일, 신청일: '21년 3월 제출기간: '20년 1월 ~ 12월 직원 수가 창업일 당시 0명, '20년 5월부터 1명 고용</p> <p>(필요서류)</p> <p>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실내역 포함) 2020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지역가입자로 상시근로자 없음</p> <p>②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18년 5월~12월) 2020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대표자 제외한 근로자 1명임을 확인</p>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4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①~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 ①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②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③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④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⑤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관련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①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 중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4조 및 제7조 중 "평균매출액 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 중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개월 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제4조(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 법 제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4.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5.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제3조(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① 영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세부적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이라 한다)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

제5조(확인신청) ④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참고5

스마트 설비 지원기업 확인 기준

< 도입유형별 지원대상 >

도입유형	지원대상											
<p>유형A</p>	<p>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가 확인된 도입기업 (신청기업 및 기 선정업체 포함, 공급기업 제외)</p> <p>*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 및 고도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스마트공장시범공장 구축지원 업종별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지원기업) 노동친화형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제조 데이터 분석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p> <p><확인방법>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art-factory.kr) →사업안내→도입기업 지원현황 조회→과제진행상태가 '협약완료' 단계 이후임을 확인(협약완료, 중간·최종점검, 감리, 사업종료 등)</p> <p>* 신청취소, 사업중도포기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p>											
<p>유형B</p>	<p>정부의 구축수준 확인제도를 통한 스마트공장 구축확인 기업</p> <p><확인방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수준확인 위탁기관'의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유효기간 이내)" 사본 징구</p> <p>*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위탁기관 ('20년 10월 현재)</p> <table border="1" data-bbox="406 1478 1380 1836"> <thead> <tr> <th>구분</th> <th>기관명</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8">확인기관</td> <td>한국표준협회</td> </tr> <tr> <td>한국생산성본부</td> </tr> <tr> <td>SBC인증원</td> </tr> <tr> <td>대한상공회의소</td> </tr> <tr> <td>한국품질재단</td> </tr> <tr> <td>한국경영인증원</td> </tr> <tr> <td>한국능률협회컨설팅</td> </tr> <tr> <td>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td> </tr> </tbody> </table>	구분	기관명	확인기관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SBC인증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품질재단	한국경영인증원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구분	기관명											
확인기관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SBC인증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품질재단											
	한국경영인증원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1 유형A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확인

① 홈페이지 접속 : www.smart-factory.kr

② 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ENGLISH 로그인 | 회원가입 | 중소기업24통합로그인 | 회원크기 + | 원래대로 -

사업안내 알림/참여마당 홍보관 사업관리 기관소개

자주찾는 서비스

사업공고
지원사업 소개
담당자 연락처
공급기업 소개
맞춤형 공급기업검색
도입기업 지원현황

사업소개 맞춤형기업검색 우수구축사례 유관기관연락처

공지사항
질의응답
견학공지

전체공고 보기 < >

신정중 2020 대중소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
접수기간 2020-10-15 ~ 2020-10-31
접수신청

신정중 2020년도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공고(신규구축)_수정공고
접수기간 2020-10-08 00:00 ~ 예산소진시 까지
접수신청

신정중 2020년도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공고(신규구축)_수정공고
접수기간 2020-10-08 00:00 ~ 예산소진시 까지
접수신청

신정중 2020년도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공고(고도화)_수정공고(코)
접수기간 2020-10-08 00:00 ~ 예산소진시 까지
접수신청

③ 검색조건 입력 (기업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후 조회

④ 조회된 업체의 스마트공장 과제진행상태* 확인

ENGLISH 로그인 | 회원가입 | 중소기업24통합로그인 | 회원크기 + | 원래대로 -

사업안내 알림/참여마당 홍보관 사업관리 기관소개

사업안내 도입기업 지원현황

사업공고
지원사업 소개
담당자 연락처
공급기업 소개
맞춤형 공급기업검색
도입기업 지원현황 >

3 검색조건 입력

기업명 제조 사업자등록번호

총 6 건

순번	사업년도	사업명	4 과제진행상태	도입기업명	도입기업사업자번호	대표자	주소
1	2019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신규구축)_추경	감리기관 배정	전우식품제조장	5150650004	박용민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봉기1길 3 2-7*봉기리 1107
2	2019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고도화)	사업종료(성공)	신우전기제조(주)	1178115488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425번길 12 5 (도당동)*신우전기제조(주) 1공장
3	2019	2019 대중소상생형(삼성전자) 스마트공장 구축 (유형2-C, 단독형)	협약완료	성진엔진미손재제조	6130572343	하치상	경상남도 진주시 큰들로 84 (상평동)*
4	2018	'스마트공장구축지원(일반/본예산)'	사업완료	신우전기제조(주)	1178115488	정준조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425번길 12 5 신우전기제조
5	2018	'생산현장디지털화(기정원)'	사업완료	광명링크제조(주)	6038108983	이남규/이재등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165로 6 (송정동)
6	2017	지자체 자체사업	사업완료	광명링크제조(주)	6038108983	이남규, 이재등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165로 6

①업체정보, ②평가등급, ③유효기간, ④기관 등 확인 후 사본 징구

가 호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서

1 기업명:
주 소:
대 표 자:

4

위 사업장은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에 따라
스마트공장 구축·운영 수준을 확인합니다.

2 평가등급 : Level Level 1~5등급 확인

3 유효기간: 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이내 여부 확인

4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반안로 57길 33(작신동) 생산성본부

※참고 : 수준확인기관*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샘플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SBC인증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품질재단, 한국경영인증원,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참고6

지역특구 지정현황

□ 지정 현황

- '04년 제도도입 이후, 214개 특구가 신규지정 되었고 19개 특구가 해제·통합되어, 현재 195개 특구가 지정·운영

< 지역별 특구현황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특구(개)	13	7	4	3	3	1	2	19	14	15	18	14	36	28	15	3	195

○ 세부 지정 현황

시·도	시·군·구	특 구 명 칭	지정 년도
서울	동대문구	서울 약령시한방산업특구	2005년
	노원구	노원 국제화교육특구	2007년
	중 구	서울 중구 영어교육특구	2007년
		서울 중구 해피메디컬투어리즘특구	2014년
	강남구	강남 청담·압구정패션특구	2008년
	관악구	관악 Edu-Valley교육특구	2010년
	은평구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2015년
	성동구	성동 용·북합혁신교육특구	2015년
	강서구	서울 강서미라클-메디특구	2015년
	중랑구	중랑 역사문화교육특구	2016년
	도봉구	도봉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2017년
	영등포구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2017년
동작구	동작 직업교육특구	2019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2005년
	기장군	기장 미역·다시마특구	2007년
	동 구	부산 동구 차이나타운특구	2007년
	남 구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	2010년
	금정구	부산 금정 문화예술교육특구	2012년
	동래구	동래 문화교육특구	2015년
	사하구	감천 문화마을특구	2017년
대구	중 구	대구 약령시한방특구	2004년
		대구 패션주얼리특구	2005년
	북 구	대구 안경산업특구	2006년
		대구북구 고대역사문화체험특구	2017년
인천	서 구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2005년
	강화군	강화 약쑥특구	2006년

시·도	시·군·구	특 구 명 칭	지정 년도
	중 구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특구	2007년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광산구 우리밀산업특구	2011년
	남 구	광주 남구 문화교육특구	2011년
	동 구	광주 동구 문화예술특구	2017년
	대전	대전(동구, 중구) 근대문화예술특구	2017년
울산	울주군	울주 언양·봉계 한우불고기특구	2006년
	남 구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2008년
경기	이천시	이천 도자산업특구	2005년
	군포시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2005년
	양평군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2005년
		양평 헬스투어힐링특구	2016년
	고양시	고양 화훼산업특구	2006년
		고양 전시문화특구	2010년
	여주시	여주 쌀산업특구	2006년
	양주시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2008년
	안산시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2009년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	2020년
	가평군	가평 잣산업특구	2011년
	시흥시	시흥오이도 선사·해안문화특구	2012년
	의왕시	의왕 철도특구	2013년
	남양주시	남양주·양평 자전거레저특구	2015년
	수원시	수원 인문기행특구	2016년
	부천시	부천 만화영상산업융합특구	2017년
	광명시	광명 글로벌평생학습특구	2017년
	안양시	안양 인문교육특구	2017년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양주·포천·동두천 섬유가죽패션클러스터산업특구	2018년
	강원	원주시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원주 옷·한지산업특구			2006년
태백시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2005년
강릉시		강릉 싸이언스파크특구	2005년
화천군		화천 평화·생태특구	2006년
삼척시		삼척 소방방재산업특구	2008년
영월군		영월 박물관고을특구	2008년
정선군		정선 아리랑5일장특구	2010년
인제군		인제 산나물특구	2011년
		인제 용대황태산업특구	2014년
평창군		평창 산양삼특구	2014년
홍천군		홍천 청정산양삼특구	2014년
		홍천 전원도시 귀농·귀촌특구	2016년
강릉시, 속초시, 평창군, 고성군		강원(강릉·속초·평창·고성) 명태산업광역특구	2015년
충북	제천시	제천 약초웰빙특구	2005년
	옥천군	옥천 묘목산업특구	2005년

시·도	시·군·구	특 구 명 칭	지정 년도	
충청	충주시	옥천 옷산업특구	2005년	
		충주 사과특구	2005년	
		충주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	2005년	
	영동군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2005년	
		영동 감고을감산업특구	2007년	
	단양군	단양 석회석산업발전특구	2006년	
	음성군	음성 다올찬친환경수박특구	2006년	
	청주시	청주 직지문화특구	2007년	
	보은군	보은 대추한우특구	2008년	
	증평군	증평 에듀팜특구	2009년	
	청주시, 충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충북 태양광특구	2011년	
	진천군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2013년	
		진천 숲산업클러스터 특구	2020년	
충남	금산군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2005년	
		금산·추부 깻잎특구	2015년	
	논산시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2006년	
		논산 양촌곶감특구	2006년	
		강경 발효젓갈산업특구	2007년	
	청양군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2006년	
	예산군	예산 황토사과특구	2007년	
	홍성·예산군	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	2008년	
	홍성군	홍성 유기농업특구	2014년	
	서천군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2007년	
		서천 한산소곡주산업특구	2009년	
		서천 친환경 서래야 김 산업특구	2020년	
	아산시	아산 국제화교육특구	2007년	
	천안시	천안 국제화교육특구	2008년	
	서산시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2008년	
	부여군	부여 양송이특구	2009년	
	공주시	공주 알밤특구	2010년	
	보령시	보령 만세버섯산업특구	2016년	
	전북	순창군	순창 장류산업특구	2004년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2008년
고창군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2004년	
		고창 경관농업특구	2004년	
완주군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2005년	
남원시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2005년	
진안군		진안 홍삼한방특구	2005년	
부안군		부안 청정누에타운특구	2006년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특구	2007년	
김제시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	2016년	
전주시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	2010년	

시·도	시·군·구	특 구 명 칭	지정 년도
	장수군	장수 말레저문화특구	2011년
	정읍시	정읍 구절초향토자원진흥특구	2015년
	임실군	임실엔치즈·낙농특구	2016년
전남	순천시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2004년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2008년
	여수시	여수 관광국제화교육특구	2006년
	곡성군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2005년
		곡성 21세기농촌교육선진화특구	2006년
	함평군	함평 나비산업특구	2006년
		함평 천지한우산업특구	2008년
	장흥군	정남진 장흥토요시장생약초한우특구	2006년
		정남진 장흥 문학관광기행특구	2008년
		장흥 청정해역갯벌생태산업특구	2017년
	강진군	강진 외국어교육특구	2006년
	보성군	보성 녹차산업특구	2007년
		보성 영어 평생교육 특구	2009년
		보성 벌교꼬막문화산업 특구	2015년
	광양시	광양 국제화평생교육특구	2008년
		광양 매실산업특구	2008년
	신안군	신안 천일염산업특구	2008년
		신안 시금치·대파섬채산업특구	2017년
	고흥군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	2009년
		고흥 웰빙유자석류특구	2014년
		고흥 분청사기문화예술특구	2016년
	영광군	영광 굴비산업특구	2009년
		영광 보리·모깃잎 산업특구	2010년
	완도군	완도 해조류·전복산업특구	2009년
	구례군	구례 야생화생태특구	2010년
		구례 산수유산업특구	2011년
	나주시	나주 배산업특구	2010년
		나주 에너지교육특구	2016년
	해남군	땅끝해남 웰빙고구마산업특구	2010년
	화순군	화순 백신산업특구	2010년
	목포시	목포 세계화인재양성특구	2011년
	진도군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	2013년
진도 울금산업특구		2018년	
영암군	영암 무화과산업특구	2015년	
담양군	담양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2016년	
장성군	장성 편백힐링특구	2016년	
경북	영양군	영양 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특구	2005년
		영양 고추산업특구	2007년
	안동시	안동 산약(마)마을특구	2005년

시·도	시·군·구	특 구 명 칭	지정 년도	
	상주시	상주 곱감특구	2005년	
		상주 고랭지포도특구	2006년	
	영천시	영천 한방진흥특구	2005년	
	영덕군	영덕 대게 특구	2005년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2007년	
		영덕 유소년축구특구	2016년	
	성주군	성주 참외산업특구	2006년	
	김천시	김천 포도산업특구	2006년	
		김천 자두산업특구	2006년	
	의성군	의성 마늘산업유통특구	2006년	
	문경시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2006년	
	울진군	울진 로하스농업특구	2006년	
	경산시	경산 종묘산업특구	2007년	
	영주시	영주 글로벌인재양성특구	2007년	
		영주 힐링특구	2014년	
	봉화군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2007년	
	포항시	포항 구룡과메기산업특구	2007년	
	청도군	청도 반시나라특구	2007년	
		청도 우리정신글로벌화교육특구	2012년	
	구미시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2008년	
	고령군	고령 대가야농촌체험특구	2008년	
	칠곡군	칠곡 양봉산업특구	2008년	
	청송군	청송 사과특구	2008년	
	예천군	예천 곤충산업특구	2009년	
	경주시	경주 유소년스포츠특구	2016년	
	경남	창녕군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2005년
			창녕 우포누리 마늘·양파산업특구	2016년
산청군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2005년	
의령군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2005년	
함양군		함양 지리산 산양삼산업특구	2005년	
거창군		거창 사과·딸기산업특구	2013년	
		거창 향노화힐빙특구	2016년	
		거창 승강기밸리산업특구	2019년	
김해시		김해 평생교육특구	2005년	
하동군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2006년	
고성군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2007년	
거제시		거제 해양휴양특구	2010년	
창원시		창원 단감산업특구	2015년	
함안군		함안 수박산업특구	2016년	
합천군		합천 국보·영상테마체험특구	2017년	
제주	서귀포시	국토최남단 마라도청정특구	2004년	
		서귀포휴양예술특구	2013년	
	제주시	제주 추자도 참굴비 섬체험 특구	2009년	

참고7

전국 지역센터 및 관할구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전화(☎1357)

지역본부 및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서울강원지역본부	(02)730-936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대시앙루브 7층	서울특별시,강원도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02)730-9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중구,종로구,용산구, 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02)2215-098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42 청양빌딩 4층	중랑구,광진구,강동구, 송파구,성동구
(서울)서부센터	(02)839-8321 (02)839-87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3 목동비즈타워 604호	강서구,양천구,구로구, 영등포구,금천구
(서울)남부센터	(02)585-8622 (02)585-862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 훈민타워 4층	강남구,서초구,동작구, 관악구
(서울)북부센터	(02)990-9101 (02)990-9104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86 제이슨빌딩 5층	강북구,성북구,노원구, 도봉구,동대문구
(강원)춘천센터	(033)243-1950 (033)244-9164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춘천시,홍천군,양구군, 화천군,철원군
(강원)강릉센터	(033)645-1950 (033)645-3695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한상공회의소 3층	강릉시,평창군
(강원)원주센터	(033)746-1950 (033)746-1990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201호	원주시,횡성군,영월군
(강원)삼척센터	(033)575-1950 (033)575-1953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1층	삼척시,동해시,태백시, 정선군
(강원)속초센터	(033)638-1950 (033)638-1951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중앙로 183 속초시청 해양수산과동 2층	속초시,양양군,고성군, 인제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051)469-4680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중부센터	(051)469-1644 (051)469-3286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중구,영도구,서구,사하구, 동구
(부산)북부센터	(051)341-8052 (051)342-8175	부산광역시 북구 기찰로12 이수타워 9층	북구,사상구,강서구
(부산)남부센터	(051)633-6562 (051)633-067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6층	부산진구,연제구,동래구, 금정구
(부산)동부센터	(051)761-2561 (051)761-2564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91 부산은행 광안동지점 2층	남구,수영구,해운대구, 기장군
(울산)울산센터	(052)260-6388 (052)260-2472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5층	중구,남구,북구,동구, 울주군
(경남)창원센터	(055)275-3261 (055)275-3264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창원영업부 3층	창원시(구,마산시,진해시), 창녕군,합안군
(경남)진주센터	(055)758-6701 (055)758-710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26 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	진주시,사천시,산청군, 의령군,남해군,하동군, 거창군,함양군,합천군
(경남)김해센터	(055)323-4960 (055)323-4963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층	김해시
(경남)통영센터	(055)648-2107 (055)648-2109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한려지점) 3층	통영시,거제시,고성군
(경남)양산센터	(055)367-7112 (055)367-7116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3 양산비즈니스센터 4층	양산시,밀양시

지역본부 및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29-4633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053)628-4314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3층	서구,중구,남구,수성구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053)341-3900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북구,동구
(대구)서부센터	(053)639-3404 (053)639-3411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15길 8 595b 4층	달서구,달성군
(경북)안동센터	(054)854-3281 (054)854-3284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661 남부빌딩 2층	안동시,상주시,의성군, 청송군,영양군,
(경북)구미센터	(054)475-5682 (054)475-5681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구미시,김천시,성주군, 칠곡군,고령군,군위군
(경북)포항센터	(054)231-4363 (054)231-436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299 신한은행 4층	포항시,영덕군,울진군, 울릉군
(경북)경주센터	(054)776-8343 (054)776-8346	경상북도 경주시 북문로 125-5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3층	경주시,경산시,영천시, 청도군
(경북)영주센터	(054)634-6975 (054)634-6980	경상북도 영주시 선비로 182 영주상공회의소 1층	영주시,문경시,봉화군, 예천군
광주호남지역본부	(062)369-8754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광주광역시,전라도,제주도
(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062)366-2136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서구,남구
(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062)954-2085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경제고용진흥원 7층	광산구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062)525-2726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193 동광주빌딩 2층	동구,북구
(전남)목포센터	(061)285-6347 (061)285-6349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목포시,무안군,해남군, 강진군,영암군,장흥군, 신안군,완도군,진도군
(전남)순천센터	(061)741-4153 (061)741-4159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 5층	순천시,광양시,구례군, 보성군,고흥군,곡성군
(전남)여수센터	(061)665-3600 (061)665-3607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55 여수상공회의소 4층	여수시
(전남)나주센터	(061)332-5302 (061)332-5309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85 비전타워 306호	나주시,화순군,합평군, 영광군,장성군,담양군
(제주)제주센터	(064)751-2101 (064)751-21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4층	제주도
(전북)전주센터	(063)231-8110 (063)231-811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전주시,완주군,진안군, 무주군
(전북)익산센터	(063)853-4411 (063)853-4413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87 상공회의소 3층	익산시
(전북)정읍센터	(063)533-1781 (063)533-1783	전라북도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	정읍시,김제시,고창군, 부안군
(전북)남원센터	(063)626-0371 (063)626-0372	전라북도 남원시 향단로 83 KT빌딩 1층	남원시,장수군,임실군, 순창군
(전북)군산센터	(063)445-6317 (063)445-6316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 124 흥국생명빌딩 301호	군산시
경기인천지역본부	(031)204-30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4층	경기도,인천광역시
(경기)수원센터	(031)244-5161 (031)244-512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수원시,용인시
(경기)평택센터	(031)666-0260 (031)666-0270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31 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2층	평택시,안성시

지역본부 및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경기)화성센터	(031)8015-5301 (031)8015-5304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44 동탄스카이뷰빌딩 503호	화성시,오산시
(경기)광명센터	(02)2066-6348 (02)2066-6347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층 601호	광명시,시흥시
(경기)성남센터	(031)705-7341 (031)707-734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성남시,광주시,이천시, 여주시
(경기)의정부센터	(031)876-4384 (031)876-438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	의정부시,동두천시,포천시, 양주시,연천군,가평군
(경기)부천센터	(032)655-0381 (032)655-038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 부천상공회의소1층	부천시,김포시
(경기)고양센터	(031)925-4266 (031)925-426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호	고양시,파주시
(경기)안양센터	(031)383-1002 (031)383-055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지점 3층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 시
(경기)안산센터	(031)482-2590 (031)482-259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815 안산우체국 1층	안산시
(경기)하남센터	(031)794-4383 (031)794-4390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 6층	하남시,구리시,남양주시,양 평군
(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032)437-357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	연수구,미추홀구,남동구, 중구,동구,옹진군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032)514-4014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337 신한은행 5층	부평구,계양구,서구, 강화군
대전충청지역본부	(042)864-1609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00 동아생명빌딩 1층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042)864-160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102호	유성구,서구,대덕구
(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042)223-0665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00 동아생명빌딩 1층	중구,동구
(세종)세종센터	(044)868-4524 (044)868-45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1 3층 303호	세종시
(충남)천안아산센터	(041)567-5302 (041)567-5308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8층	천안시,아산시,예산군
(충남)공주센터	(041)852-1183 (041)852-1186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3층	공주시,보령시,청양군
(충남)논산센터	(041)733-5064 (041)733-5067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410번길 6 문경빌딩 3층(구 황산빌딩)	논산시,계룡시,부여군, 서천군,금산군
(충남)서산센터	(041)663-4981 (041)663-4980	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2청사 1동 3층	서산시,태안시,당진군, 홍성군
(충북)청주센터	(043)234-1095 (043)234-109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19번길 37 신한은행 3층	청주시
(충북)충주센터	(043)854-3616 (043)854-3619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충주시
(충북)제천센터	(043)652-1781 (043)652-1784	충청북도 제천시 의립대로6길 32 문화회관 2층	제천시,단양군
(충북)음성센터	(043)873-1811 (043)873-1814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대하2가길 3 미르타워 3층	음성군,괴산군,증평군, 진천군
(충북)옥천센터	(043)731-0924 (043)731-0926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옥천읍사무소 3층	옥천군,보은군,영동군

참고8

“소상공인마당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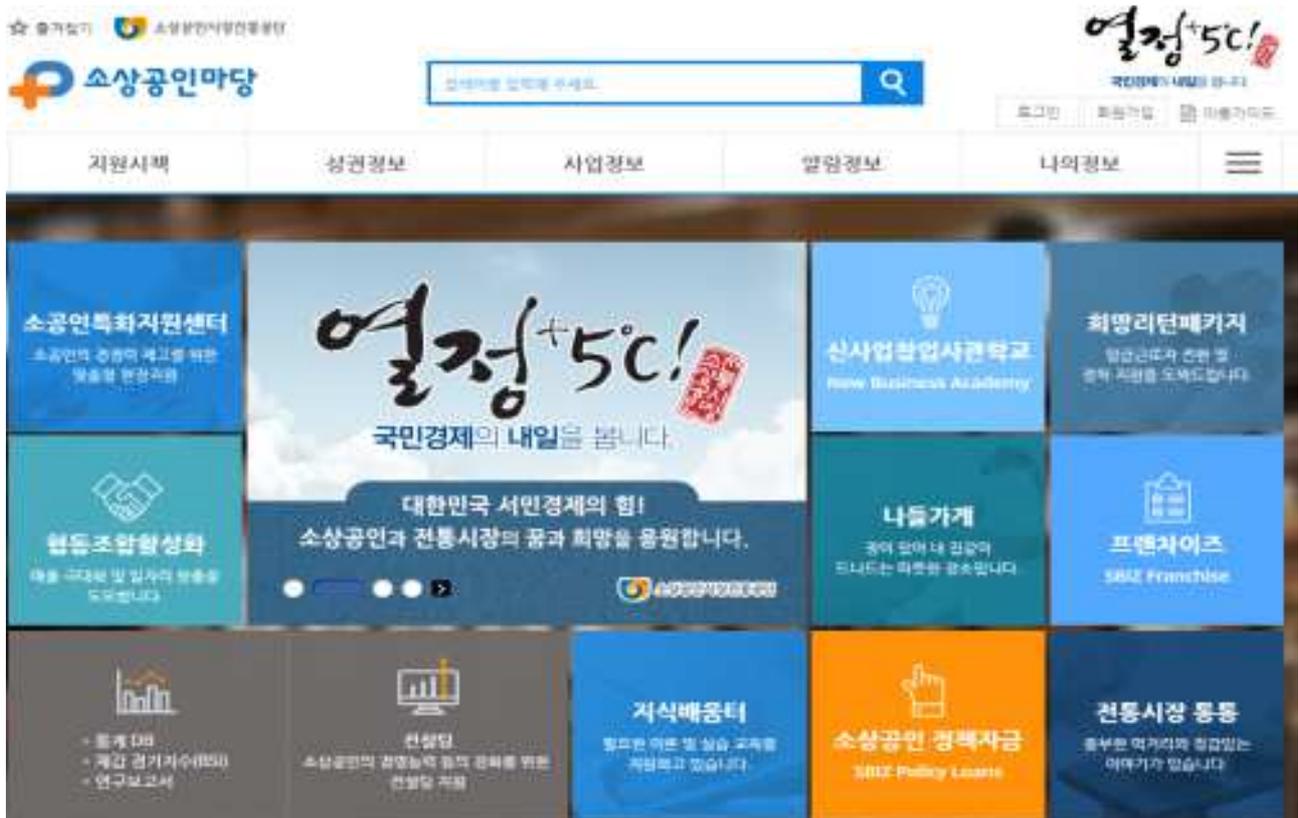
1

소상공인마당 회원가입 방법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온라인 신청 전, 소상공인마당사이트에 협동조합 조합원 전원의 회원가입은 필수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공포'13.8.6, 시행'14.8.7일)되어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기에 휴대폰 또는 I-PIN을 통해 본인 인증 후 회원가입 필요

①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www.sbiz.or.kr)에서 '회원가입'을 클릭



② '서비스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용 확인 후 동의란 체크
(동의하지 않을 시 회원가입 불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일반 회원 가입

약관 >
 회원정보입력 >
 완료

회원 가입시, '이용약관' 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그리고 상임인증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관련문의 042)363-7737~8

이용약관 동의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택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선택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회원의 "회원"을 당 사이트에 가입하여 모든 회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회원"입니다.

* 위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본 약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기반으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처리하고 있습니다.

I.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소상공인지원 포털(www.sbiz.or.kr)은 소상공인 지원정책 연동(교육·컨설팅, 자금 등) 및 상담서비스(SMS 제공 등)를 위하여 이용자 개인의 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있습니다.

II.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 1)계정명,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개인식별 번호, ID(ID), 비밀번호,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소상공인, 컨설턴트 등, 해당없음자 등), 관심영종, 관심지역
 선택 2)계정명 : SMS 수신여부, 이메일 수신여부, 관심분야
 자동수집 3)계정명 : 접속IP정보(통신망에서)

III.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필요시점까지)
 회원탈퇴 요청시 개인정보 및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탈퇴시점(지원관련 문의 및 컨설팅, 자금 등 지원신청자료는 제외)

IV.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할 경우의 불이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회원가입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담처(wel@sbiz.or.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③ 원하는 인증 방법 중 택1

(휴대폰인증) 실명인증에서 '휴대폰인증'을 클릭 후 새로 뜨는 팝업창에서 통신사 선택 후 개인정보 이용 등에 동의, 휴대폰번호 및 생년월일로 실명 인증

(아이핀 활용) '아이핀' 버튼을 클릭하여 발급된 아이핀(I-PIN)으로 인증 ⇨ 아이핀 아이디 부재 시 신규발급 진행

회원가입을 위한 본인인증

휴대폰인증
(본인명의로)

I-PIN 인증
(본인명의로)

I-PIN신규발급
(공공 I-PIN센터)

최저 공인인증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4,5,7 차항, 주민등록번호외적금지)에 따라 안전행정부 지정해 근거에의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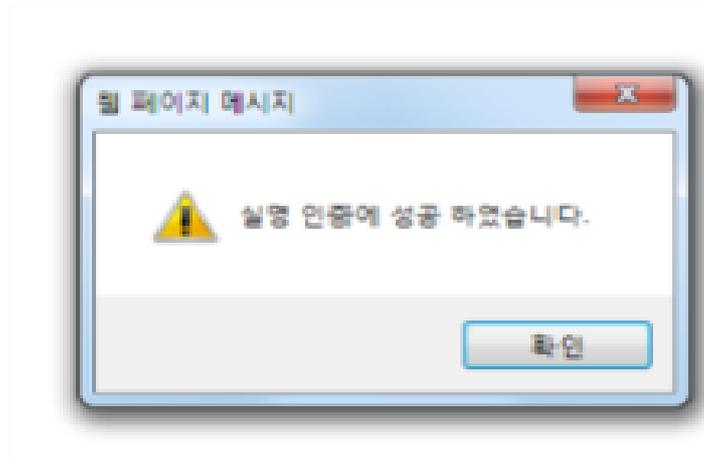
< 업종에 근거한 조치방법 >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인증 → 휴대폰, I-PIN을 이용한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만 인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 I-PIN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I-PIN이 없는 경우 공공 I-PIN센터를 통해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I-PIN발급 시 필요사항 :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번호시스템(세대주 1명 이상의 인증서 가능), 방문신청
 (휴-민-동 주민센터 공공I-PIN 발급자) 중 선택
 I-PIN관련 문의 : 공공I-PIN 콜센터 02-919-3050 월~일 09-18시 (<http://www.g-pin.go.kr>)



④ 정상적으로 실명을 인증 시 아래와 같이 팝업창으로 확인 가능



⑤ 가입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소상공인 마당 회원가입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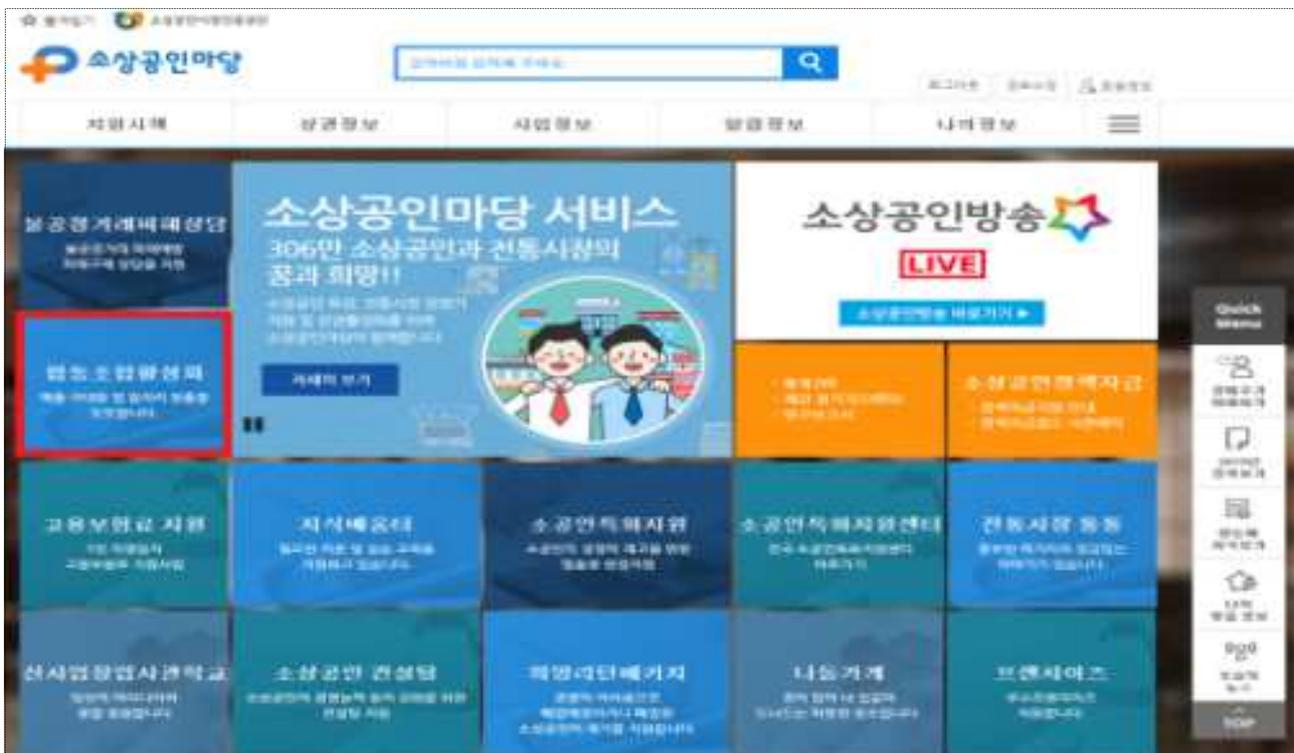
2

사업신청 방법

★ 소상공인마당사이트 회원가입 후, 협업활성화 사이트(coop.sbiz.or.kr)에서 공동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동사업 신청을 위해서 모든 협동조합은 반드시 사전에 소상공인마당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후 협업 활성화 사이트에서 "신청 완료"하셔야 최종적으로 접수됩니다.

1. 소상공인마당에서 '협업활성화'(coop.sbiz.or.kr)를 클릭



2. 메인화면 상단 우측의 [로그인] 클릭 후 '로그인'



3. '사업공고'로 이동하여 사업공고 목록 조회 후 '사업신청'으로 이동하여 희망하는 사업 신청



4. 신규사업 신청

- ① 사업신청 목록에서 신청상태가 “신청전”인 사업공고의 [신청] 버튼 클릭
- ② 유의사항 및 동의사항 화면에서 내용을 숙지하고 하단의 동의서 체크박스에 체크한 후 하단 우측의 [확인] 버튼을 클릭

공공사업 신청 공고 정보

분류	신청상태	사업년도	공고번호
일반사업	접수중	2021	210001
일반사업	신청전	2021	210002

공공사업 > 사업신청

유의사항 및 동의사항

1. 해당 공고는 당해 공표일자로부터 시작
2. 해당 공고가 기대안으로 선정될 경우, 본안과 관련된 서류의 일괄 제출하여야 함으로 유의
3. 특히 계약 체결조건 조항의 미흡함을 사전에 점검하여, 불합격에 대한 요청서 제출 또는 계약체결을 할 수 있음(기)
4. 신청 공고에 따라 사업신청 조건에 대한 상세 설명이 제공됩니다.
5. 계약이행에 필요한 담보에 대한 상세에 따라 담보 제공이 필요한 공고일 경우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담보 제공에 대한 설명이 제공됩니다.
6. 유의사항 및 동의사항을 숙지하고 동의하는 확인합니다.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 ③ 사업신청은 자가진단, 기본정보, 사업비 정보, 조합원 정보 4단계를 구분하여 입력하며, “자가진단”에서는 자격요건별 진단결과 입력

공공사업 > 사업신청

자가진단 기본정보 사업비 조합원

자가진단

일반형 전문형 조합원형

유의사항 및 동의사항

1. 자격요건

2. * 국내 기업에 해당 여부 / 활동주요기간별 실적 연평균액과, 조합원 중 최고실업급여수급액이 3개월 이상 연속수급금액인 경우 해당공고 20개사 이상(5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선정이행시 추가사항을 충족하고 있는 활동주요기간별 실적 연평균액이 200,000,0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타, 주요, 기타를 포함하여 설명, *비밀 유지

3. * 국내 기업에 해당 여부 / 활동주요기간별 실적 연평균액과, 조합원 중 최고실업급여수급액이 3개월 이상 연속수급금액인 경우 해당공고 20개사 이상(5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선정이행시 추가사항을 충족하고 있는 활동주요기간별 실적 연평균액이 200,000,0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타, 주요, 기타를 포함하여 설명, *비밀 유지

4. * 활동주요기간 별 실적

5. * 조합원 중 최고실업급여수급액 연평균액과, 조합원 중 최고실업급여수급액이 3개월 이상 연속수급금액인 경우 해당공고 20개사 이상(5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선정이행시 추가사항을 충족하고 있는 활동주요기간별 실적 연평균액이 200,000,0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타, 주요, 기타를 포함하여 설명, *비밀 유지

6. * 조합원 중 최고실업급여수급액 연평균액과, 조합원 중 최고실업급여수급액이 3개월 이상 연속수급금액인 경우 해당공고 20개사 이상(5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선정이행시 추가사항을 충족하고 있는 활동주요기간별 실적 연평균액이 200,000,0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타, 주요, 기타를 포함하여 설명, *비밀 유지

7. * 조합원 중 최고실업급여수급액 연평균액과, 조합원 중 최고실업급여수급액이 3개월 이상 연속수급금액인 경우 해당공고 20개사 이상(5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선정이행시 추가사항을 충족하고 있는 활동주요기간별 실적 연평균액이 200,000,0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타, 주요, 기타를 포함하여 설명, *비밀 유지

④ 기본정보에서는 협동조합 정보 및 제출서류 첨부

-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중복체크 및 NICE 버튼을 활용하여 첨부파일을 자동으로 수신하며, 나이에 미리 가입해서 동의한 조합 및 조합원에 한해서 NICE 정보 수신 가능
-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는 필수여부에 "필수"로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업로드 해야만 진행할 수 있으며, 필수여부가 선택인 경우 선택적으로 첨부 가능

기본정보

1. 법인명

2. 조합구분

3. 사업자등록번호

NICE

NICE 원클릭 서비스 미가입 시 "해당사업자 정보가 없습니다. 원클릭서비스에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지 출력 하며 확인 버튼 클릭 시 https://www.one-click.co.kr/cm/CM0100M001GE.nice?cporcd=179&pdf_seq=5 로 이동 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명	제출방법	필수여부
사업계획서	...	필수
협동조합원명단	...	필수
협동조합원 동의서	...	필수
협동조합원 신분증 사본	...	필수
협동조합원 주민등록사본	...	필수
협동조합원 가족관계증명서	...	필수
협동조합원 소득세 신고서	...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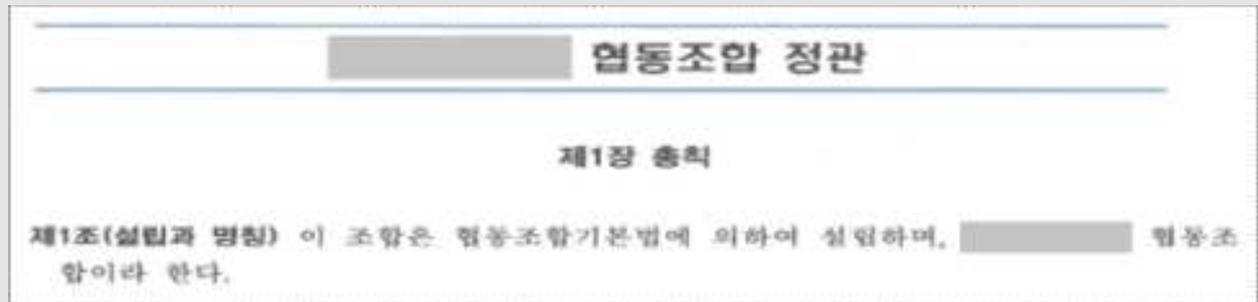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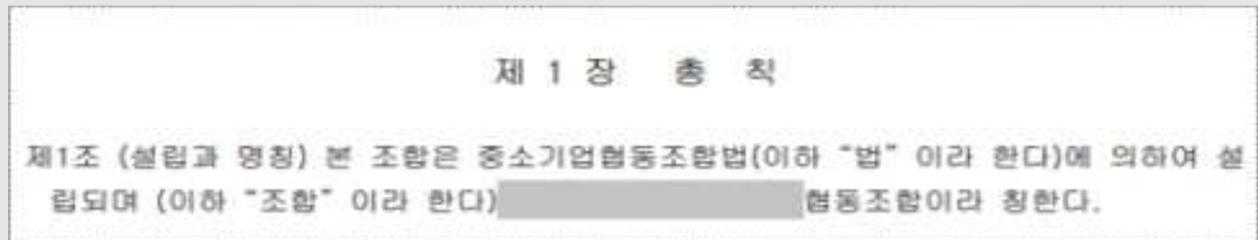
(협업체명) 협업체명은 협동조합 목록을 선택박스로 표시하며, 협동조합이 한 개 이상인 경우 선택 가능. 협업체가 신규조합인 경우 협업체명을 [신규]로 선택하고 협동조합 정보를 입력하면 협업체 정보가 자동 생성

(조합구분) 협동조합 정관 제1조를 참고하여 선택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주무관청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공동사업 신청 가능
- **일반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정관 상 이익배당에 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주무관청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공동사업 신청 가능



(지역) 사업자등록증 상 기재된 '협동조합의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역 선택 (관할 센터는 자동 배정되며 임의선택 불가)

[참고] 사업자등록증명

영 수 번호	사업자등록증명 (법인사업자)	시	구	시
영 수 (영인명)	[redacted] 협동조합			
사업자등록번호	[redacted]			
성명 (대표자)	[redacted]			
주인(법인)등록번호	[redacted]			
사업장소재지	[redacted]			
대 령 직	년 월 일			
사업제등록일	년 월 일			
업	[redacted]			
종	[redacted]			

(기본정보) 협동조합의 정보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 협동조합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개업연월일 : 협동조합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
- 법인등록번호 : 협동조합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법인등록번호
- 법인설립연월일 : 협동조합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법인설립연월일
- **이사장 성명 및 회원 아이디 [검색]을 통해 이사장 회원인증 후 이사장 정보 입력**
- 한국표준산업분류 : 협동조합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 조회 후 표준명 클릭
- 협동조합소재지 : 협동조합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
- 업태 및 종목 : 협동조합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 종목 작성

(매출액 및 영업이익) 사업개업연월일에 따라 입력항목 자동 생성

- **자동 생성 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정확한 데이터 입력 필요

(사업비) 원하는 지원항목에 체크하면 하단에 표시되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항목 (단가공급액, 수량 등) 기재

(조합원) 반드시 전 조합원 소상공인마당 회원가입 후, 조합원 등록 필수

- 추가할 조합원이 있을 경우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조합원 추가
- 대표 및 조합원 정보 수정 시 [수정]을 클릭하여 정보 수정
-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완료] 클릭하며, [입력내용검토]를 해야만 최종신청 완료

참고9

제출서류 발급처

연번	서류명	발급처
1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온/오프라인] 법원등기소, 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2	- 사업자등록증명	[온/오프라인]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3	- 소상공인 확인서	[온/오프라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http://sminfo.smba.go.kr)
4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온/오프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5	-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온/오프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6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온/오프라인] 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7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온/오프라인] 신청업체(세무대리인) 신고 서 사본 (세무대리인 또는 신청인 날인)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8	- 표준재무제표증명	[온/오프라인]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9	-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10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1	- (국세)납세증명서	[온/오프라인]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12	- 지방세납세증명서	[온/오프라인] 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민원24(www.minwon.go.kr), 위텍스(www.wetax.go.kr)